2026 기록의 날 기념

기록관리 세미나 자료집

일 시	2026. 6. 9.(화) 15:00 ~ 18: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
주 최	국가기록원
공동주관	국가기록원·한국기록학회·한국기록관리학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6 기록의 날 기념

기록관리 세미나 자료집

일　　시 2026. 6. 9.(화) 15:00 ~ 18: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

주　　최 국가기록원

공동주관 국가기록원·한국기록학회·한국기록관리학회

진행일정

시간		내 용	비 고
15:00~15:02	′2	• 개회	사회자
15:02~15:07	′5	• 개회사	국가기록원장
15:07~15:12	′5	• 축사	한국기록학회장
15:12~15:20	′8	• 기념촬영	주요 내·외빈
15:20~15:40	′20	• <1세션> 1주제 발표 -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20년 성과와 과제	박종연 협회장(한국기록전문가협회)
15:40~16:40	′60	• 1주제 토론	(좌장) 이영남 교수(한신대학교) (토론) 황진현 교수(청주대학교) 윤정훈 대표(디아키비스트) 이승억 성남분원장(국가기록원) 홍원기 연구관(국회기록원) 남경호 연구관(국가보훈부)
16:40~16:55	′15	• 휴식	
16:55~17:15	′20	• <2세션> 2주제 발표 - AI시대, 국가기록관리체계의 혁신	오효정 교수(전북대학교)
17:15~17:55	′40	• 2주제 토론	(좌장) 박진호 교수(한성대학교) (토론) 안대진 대표(㈜아카이브랩) 방재현 대표(㈜스토리안트) 이젬마 과장(국가기록원) 전가희 연구사(경상남도기록원)
17:55~18:00	′5	• 폐회	사회자

Contents

<1세션>

발표 1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20년 성과와 과제 ····· 10
박종연 협회장(한국기록전문가협회)

토론문

• **토론문 1** 황진현 교수(청주대학교) ····· 23
• **토론문 2** 윤정훈 대표(디아키비스트) ····· 27
• **토론문 3** 이승억 성남분원장(국가기록원) ····· 31
• **토론문 4** 홍원기 연구관(국회기록원) ····· 35
• **토론문 5** 남경호 연구관(국가보훈부) ····· 41

<2세션>

발표 2

AI 시대, 국가기록관리체계의 혁신 ····· 46
오효정 교수(전북대학교)

토론문

• **토론문 1** 안대진 대표((주)아카이브랩) ····· 59
• **토론문 2** 방재현 대표((주)스토리안트) ····· 63
• **토론문 3** 이젬마 과장(국가기록원) ····· 67
• **토론문 4** 전가희 연구사(경상남도기록원) ····· 71

간지(색지)

간지(색지)

발표 1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20년 성과와 과제

박종연 협회장(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26년「기록의 날」기념 기록관리 세미나

2006 → 2026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20년의 성과와 당면 과제

박종연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협회장

2026. 6. 9

목 차

Ⅰ 2006년 전부개정의 배경과 의의
2006년 – 국가 기록관리 철학의 전면 전환

Ⅱ 지난 20년의 성과
거시적·미시적·기록문화적 성과 종합

Ⅲ 문제점과 당면 과제
20년의 성과와 더불어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당면 과제

Ⅳ 맺음말
다음 20년을 향하여

Ⅰ

2006년 전부개정의 배경과 의의

2006년 – 국가 기록관리 철학의 전면 전환

Ⅰ.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의 배경과 의의

개정의 직접 계기

2004 "기록이 없는 나라" 보도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 — 주요 정책 150건 추적, 기록관리 전 과정의 심각한 문제 고발

2004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 출범
9개 단체 연대 — 기록개혁을 시민운동으로 조직화

2004 참여정부 기록관리혁신 로드맵 수립
혁신 종합실천계획 → 법 전부개정 동력

2006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기록관리 철학의 전면 전환

전부개정의 핵심 전환

	BEFORE	AFTER
명칭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범위	공공기관 기록물	국가적 보존가치 있는 민간기록물까지 포함
철학	행정의 부산물	민주주의 증거 ·공적 책임의 산물

※ 2006년 개정은 단순 법령 정비가 아닌 국가 기록관리 철학의 전면 전환

Ⅱ
지난 20년의 성과

거시적·미시적·기록문화적 성과

Ⅱ. 지난 20년의 성과 – 외형적 성장

① 기록관리 법제 생태계 완성
- 대통령기록물법 제정(2007)
- NAK 표준 체계 구축
- 기록관리기준표 제도 마련
- 지방기록관리 조례 전국 확산

② 국가 기록관리 거버넌스 체계 확립
- 국가기록관리위원회·전문위원회 설치
-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 범정부 기록관리 아젠다 공식화

③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 경상남도기록원(2018), 서울기록원(2019)
- 청주기록원(2022)
- 이천시립기록원(2025)
-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2026)
- 경상남도교육청기록원(2026)

④ 전자기록관리 인프라 구축
- 온나라→RMS→CAMS 3단계 체계 구축
- RAMP 중앙행정기관 48개 전 기관 확산(2024)
- 물리적 이관에서 논리적 이관 체계로 전환 추진

⑤ 기록학 독립·전문인력 양성
- 기록학 전공 대학원 전국 확산(25개)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자(약 3,300명)
- 기록연구직렬 신설(2005) 및 배치 (약 1,200명)
- 기록관 설치 대상기관 1,634개 달성(2025)

20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1위)

174만
비공개→공개 전환(2026)
※ 국가기록원

347.5km
서가길이(서울↔부산 왕복)
※ 국가기록원

Ⅱ. 지난 20년의 성과 – 기록 생애주기별 세부 성과

생산
- 기록물 생산 즉시 등록 의무화를 통한 임의 폐기·은닉 구조적 차단
- 회의록·속기록 생산 의무 확대
- 생산현황 통보 체계 마련

분류
- BRM 기반 기록관리기준표 전면 도입(업무기능 중심 전환)
- 현재 보존기간 7종 체계 확립
- 보존기간 준칙 및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구축

평가
- 기록물평가심의회 제도 정착
- 이관 전 사전 식별(평가) 체계 구축
- 기록물 폐기금지 고시
- 국가지정기록물 제도

보존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전문보존시설 설치(대전·성남·부산)
- 국가기록원 347.5km 서가 운영
- 기록물 보존시설 장비 규정

서비스
- 30년 경과 시 전면공개 원칙 명문화와 5년 주기 공개재분류 의무화
- 174만 건 비공개→공개 전환

기록문화에 미친 영향

국가 차원
- "기록없는 나라" → "기록하는 국가"
- 기록이 국가 핵심 의제로 격상

시민사회
- 정보공개·기록관리 운동 결합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창립(2008)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2010)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활동(2013)

민간·지역
- 2010년대 이후 아카이브 붐
- 개인기록, 일상기록의 확장
- 마을기록·기록문화복지 개념 등장

산업 생태계
- 기록관리 의무화 → 민간 서비스 시장 창출
- 전문 컨설팅·디지털 아카이브 업체 성장

Ⅲ
문제점과 당면 과제

20년의 성과와 더불어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당면 과제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법제위원회 보고서(2026.3.) 기준

Ⅲ. 문제점과 당면 과제 – 주요 과제

각 영역은 "20년간 나타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당면 과제"로 구성됩니다.

과제 1	과제 2	과제 3
기록의 획득 및 관리 대상 범위 확대 기록 정의 협소 → 신유형 기록 포괄·생산의무 강화·부존재 입증책임	**기록 평가제도 개편** 단위과제 미시 평가 한계 → 국가기록평가정책·기록관리기준표 재설계	**기록관리 체계 개선** 공개 관행·비밀기록 한계 → 공개원칙 명문화·국민 청구권 신설
과제 4	**과제 5**	**과제 6**
전자기록관리 고도화 · AI 혁신 전자기록 제도 공백 → AI 거버넌스·기계가독형 생산·장기보존 전략	**기록물관리기관 기능 변화 · 인력 개편** 1인 기록관·승진 적체 → "과" 규모 확대 협회 법제화 기록관 로드맵(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개편)	**민간기록문화 진흥** 민간기록 법적 지위 부재 → 사회적 기록물 개념 도입·지원 체계 구축

과제 1 – 기록의 획득 및 관리 대상 범위 확대

1-① 관리 대상 기록 확대

문제점	당면과제
• 전자문서 중심의 협소한 기록 정의 → 데이터·메신저·SNS·AI 생성 행정정보가 제도 밖에 방치 → 명시적 열거 방식으로 신유형 기록 포괄 어려움	• 기록 정의 기능·목적 중심으로 전환 → "물리적 형태에 관계없이 생성·수집·보유·관리·송수신하는 정보" → 데이터세트·CCTV·IoT·시스템로그·메신저 기록 포괄 → 기계가독형(개방형) 포맷 생산의무화

1-② 생산현황통보 제도 개선

문제점	당면과제
• 서식 중심 수동 통보 체계 → 누락·오류 구조적 발생 • 통보 대상 범위 불명확 • 시스템 자동화 근거 부재	• 시스템 메타데이터 자동 수집 기반 전환 • 자동화된 생산현황 통보 체계 구축 • 기록관리기준표 재편과 연계

1-③ 폐기금지 제도 및 생산의무 강화 / 기록 부존재 입증책임

문제점	당면과제
• 국가기록원 폐기금지를 위한 전문적·독립적 결정권 미약 → 수사기관 요청 의존 구조로 조치 지연 • 기록 미생산 처벌 부재에 따른 〃 기록 부존재 〃로 책임면제 구조	• 국가기록원 독립적·선제적· 전문적 폐기금지 결정권 시행 • 주요 회의 속기록 의무화 강화 • 공공기관이 기록 부존재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 보완

과제 2 – 기록 평가제도 개편

2-① 국가기록평가정책 수립

문제점	당면과제
• 단위과제 중심 미시 평가 한정 → 국가 차원의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적·역사적 가치 기록이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못함 → SNS·웹·데이터 등 신유형 기록 평가 기준 부재	• 국가차원 거시적 선별·평가 기준 수립 → 정부활동 기록화·시민권리 증빙·국가적 경험 기록화를 위한 제도 개편 → 기록유형별 평가·선별 정책 마련 및 평가 기준 공개

2-② 기록관리기준표 재설계

문제점	당면과제
• 단위과제 오편철로 보존가치 높은 기록이 폐기되거나 보존가치 낮은 기록이 장기보존되는 역전 현상 • 협의 절차 명문화 미비	• 기록조사(인벤토리) 절차·방법 개발 의무화 • 단위과제 협의 절차 명문화 • AI 자동분류 도입 검토

2-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재평가

문제점	당면과제
• "영구" 책정 기록물의 재평가 기준·방법 규정 미비 • 재평가 절차 불투명, 시민 참여 기제 부재	• "영구" 책정 기록물의 재평가 기준·방법 법령 규정 • 재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 시민 참여형 재평가 심의 모델 검토

과제 3 – 기록관리 체계 개선

3-① 과거사위원회 기록관리 체계 개선

문제점	당면과제
• 한시기구 특성상 기록관리 전담 인력·기준 미비 • 위원회 종료 후 기록 서비스 단절 • 사건 중심 정리·기술 방식 미흡	• 과거사 기록 전담 인력·기준 의무화 • 사건 중심 정리·기술 방식으로 전환 • 피해자·유족의 접근권 보장 체계 마련

3-② 기록공개관리 제도 개선

문제점	당면과제
• 비공개 사유 포괄적 규정 → 기관별 자의적 해석 • 비공개 상한기간 시행령 조문 부재로 유명무실 • 비공개 연장 결정에 국민이 이의 신청할 방법 없음	• 공개 원칙 법률 제35조 제1항 명문화 • 비공개 상한기간 100년 초과 금지 규정 신설 • 국민 공개재분류 청구권 신설

3-③④ 기록정보서비스 강화 / 비밀기록관리

문제점	당면과제
• 기록활용 의무 명시 미흡, 비밀 자동해제 제도 부재 • 비밀 해제 의무 미약 → 사실상 영구 비밀 발생 • 역사연구·진실규명 활용 제한	• 기관별 공개·활용 실적 평가 도입 • 비밀 지정 시 해제계획 동시 의무화 • 보호기간 만료 시 자동해제 제도 도입

과제 4

과제 4 – 전자기록관리 고도화 · AI 기록관리 혁신

4–①② AI 기록관리 거버넌스 구축 / 기록의 데이터화·기계가독형 생산

문제점	당면과제
• AI 기록관리 법적 근거·윤리 거버넌스 부재 • 인공지능기본법 등 외부 법제 변화 대응 미비 • 기록 생산이 기계 비가독 포맷 중심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AI 활용 기준·통제 조정 또는 총괄 • 설명가능한 AI(XAI) 원칙 의무화 • 개방형 포맷 전자문서 생산 의무화 / FAIR 데이터 원칙 준용

4–③ 전자화기록 원본 효력 인정

문제점	당면과제
• 전자화기록 원본 대체 규정 미비 • 진본성·사법 증거능력 확보 기준 부재 • 보존매체 수록 기록물의 법적 지위 불명확	• 전자화 절차 준수 시 원본 효력 명문화 • 블록체인·타임스탬프 등 진본성 검증 기술 활용 근거 마련 • DIP 제공 시 진본성 정보 함께 제공

4–④⑤⑥ 진본성·장기보존·증거기준 정립

문제점	당면과제
• 파일포맷 중심 외부 의존형 장기보존 구조 • 기술 변화 대응 지연, 위험 관리 전략 부재 • 디지털기록의 법적 증거 기준 미흡	•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기반 장기보존 전략 전환 • 국가기록원 내부 전담 조직 구축 • 법적·행정적 디지털기록 증거 기준 수립

과제 5

과제 5 – 기록물관리기관 기능 변화 · 인력 개편

5–①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역할 변화 / 기록관 역할 확장

문제점	당면과제
• 정책총괄·영구보존 기능 혼재 • 행정안전부 종속 구조 지속 → 정치적 개입에 구조적 취약 • 현행 기록관: 보존·관리 위주, 대시민 서비스 기능 부재	• 정책·전략 수립 전담 조직 분리 • 독립 위원회 체제 장기 목표 • 기록관의 아카이브 기능 확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위상 격상 근거

5–③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역할·조직위계 재검토

문제점	당면과제
• 법 개정(2006) 후 12년 만인 2018년에야 최초 지방기록원 설립 • 기초지자체 기록원 전국 2개소(청주·이천)에 불과 • 중앙–지방 기록관리 수준 격차 심각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역할과 조직위계 재검토 • 광역 → 기초 단위 기록원 설치 단계적 의무화 • 지역기록협의체 구성과 국비지원 기반 마련

5–④ 기록전문가 양성·자격·승진 제도 개선

문제점	당면과제
• 1인 기록관 구조와 계약직·임기제 채용의 지속 → 업무 연속성·기관 기억 단절 • 기록연구직 배치 20년이 지났으나 연구관 승진·팀장 보임 극히 드문 승진 적체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교육기관별 교과과정 편차 극심 • 전문직 재교육 체계 부재	• 1인 기록관 구조의 재편 ("과" 규모 기록관 운영 로드맵)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자격, 명칭, 교육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 • 연구관 등 승진 경로 확대 • 교육과정 인증제 도입과 재교육 프로그램 의무화

과제 6

과제 6 – 민간기록문화 진흥

6–①② 기록문화 진흥·기록활동 지원 / 민간기록의 법적 지위 마련

문제점	당면과제
• 공공기관 기록관리 통제 성격의 법 • 개별 기록물 수집 중심 → 민간 아카이브 자생력 성장 방해 • 민간기록 법적 정의 불명확 • 기업·대학 아카이브 법적 의무·지원 근거 전무	• 법률 목적(제1조) 개정: 기록유산 보존·활용·기록문화 확산 반영 • 수집 중심 → 기록활동 주체·공간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 사회적 기록물·공동체 기록물 개념 도입

6–③ 거버넌스·중간지원조직 구축

문제점	당면과제
•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민간기록문화 진흥 기능 없음 • 민간 아카이브와 공공기관을 매개할 지원조직 부재 • 지역기록협의체 구성 근거 미비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민간아카이브위원회(가칭) 설치 • 중간지원조직 지정 근거 마련 • 지역기록협의체 의무화와 지역 기록 자치 강화

6–④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 및 아카이브 생태계

문제점	당면과제
• 민간기록문화 진흥을 위한 운영비·공간·인력 지원 법적 근거 없음 • 물리적 이관 강제 구조 → 현지 보존 불가 • 마을기록 사업의 단기·행사성 운영, 디지털 민간기록 플랫폼 종료 시 소멸 위험	• 등록 민간기록물관리기관 운영비 보조 조항 신설 • 공동체 아키비스트 배치·파견 • 현지 보존 지원와 네트워크형 협력망 의무화

IV
맺음말

다음 20년을 향하여

20년의 성과

기록이 국가 아젠다로 격상되고
전자기록 인프라와 기록문화의 토대가 마련됨

20년의 한계

법·제도의 틀은 갖췄으나
실천 의지·독립성·법률 실효성이 뒷받침되지 못함

다음 20년

새로운 시대를 맞아
공공기록물법의 전면적 재설계가 필요함

핵심 개선 방향

① 기록 정의 확대 – 비공식 메신저·데이터·AI 기록까지 포괄

② 평가 체계 전환 – 국가기록평가정책 수립, 기록관리기준표 재설계

③ 기록 민주주의 실현 – 공개원칙 명문화, 국민 공개재분류 청구권 신설

④ AI·데이터 대응 – 기계가독형 생산 의무화, 위험관리형 장기보존 전략

⑤ 전문직 위상 제고 – 협회 법제화, 1인 기록관 탈피 로드맵 수립

⑥ 민간기록문화 진흥 – 민간기록 법적 지위 확립, 지역 기록 자치 강화

공공기록물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방안 — 민관 거버넌스와 투명한 절차

2006년 민관 협력의 성공 경험 → 더 강화된 민관 공동 설계

왜 민관 거버넌스가 필요한가

2006년 성공 경험

참여정부 로드맵은 민간 전문가·시민단체·정부 공동 설계였기에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실질적 법 개정으로 이어짐

행정 주도 개정의 위험

2024년 ~ 2025년 공공기록물법령 개정 시도처럼 행정 주도 개정은 기록관리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알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음

기록은 공공재

기록 관련 법제는 행정 편의가 아닌 시민의 기억·권리·민주주의의 근간
이해관계자 전체 참여가 법률의 정당성을 담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STEP 1 **공동 의제 설정**

기록관리단체협의회·학계·시민사회·국가기록원 공동 워크숍
기존 법제위원회 보고서(2026.3.)를 출발점으로 공론화 진행

STEP 2 **공개 초안 작성 및 공청회**

초안 전문 공개 + 온·오프라인 공청회 진행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투명하게 공개
반영 여부 공식 회신 의무

STEP 3 **민관 공동 입법 추진단**

국회·정부·전문가단체·학계·시민사회 등 공동 입법 추진단 구성
협의 기구를 통한 거버넌스 구조 확립

감사합니다

박종연 | p0194111@archivists.or.kr

2026년「기록의 날」기념 기록관리 세미나

"20년의 성과는 기록이 민주주의·책임행정·시민의 기억을 지키는 국가적 자산임을 증명한 역사입니다.
다음 20년은, 그 자산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를 새롭게 바꾸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간지(색지)

간지(색지)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20년 성과와 과제 토론문

황 진 현 (청주대학교 교수)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20년의 성과와 당면 과제 발표는 2006년 전부개정 이후 20년의 궤적을 법제적·실천적·문화적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한 귀중한 작업이다. 외형적 성장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직시하고 당면 과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회고에 머물지 않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발표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과제 모두에 공감하며 그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 가운데 몇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기록의 획득 및 관리 대상 범위 확대는 다변화하는 기록 유형을 관리·보존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기록으로 열거된 유형에만 관리 대상을 한정한다면, 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과 기록전문가의 입지는 점차 좁아질 수밖에 없다. 폐기금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도, 유형으로서의 기록이 아닌 기능과 목적을 중심으로 한 기록의 정의가 필요하다. 이는 기록평가제도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무엇을 기록으로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 기준과 평가 도구의 개편이 함께 요구된다.

전자기록관리 고도화와 AI 기록관리 혁신과 관련하여, 급변하는 AI 환경에 따른 기록 생애주기 전반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AI 도입으로 적체된 업무를 처리하는 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겠으나, AI 산출물의 검증과 위험관리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AI 활용의 기반이 되는 개방형 문서 포맷의 적극적 도입과 AI 친화적 메타데이터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가기록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 변화와 인력 개편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중앙부처 기록관의 업무 확장, 기록관 역할의 변화 등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며 개편이 불가피한 영역이다. 앞선 과제들이 여러 논의와 대응 속에서 조금씩 진전을 이루어 왔다면,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 변화는 20여 년 가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기록관은 현재의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 RAMP 등의 도입은 기록전문가가 수행하던 업무 일부를 자동화하거나 경감시킨다. 반면 다변화하는 업무 환경과 기록 유형의 다양화를 고려할 때, 기록전문가는 생산통제와 사전평가 등 이전과는 다른 영역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기록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의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관계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 기록관은 아카이브로서의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는 오래된 연구와 제언이 이제는 실현되어야 할 시점이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책의 집행자가 아닌 기획자이자 협의자로서,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는 기관이 아니라 전문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기록전문가 양성제도에 대한 논의 또한 지속되어야 한다. 최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명칭 개정과 공통 필수 교과목 지정에 관한 설문이 이루어진 것은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기록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은 양성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그리고 재교육 체계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양성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기록관리계 전체의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간지(색지)

간지(색지)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20년 성과와 과제 토론문

윤 정 훈 (디아키비스트 대표)

오늘 발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기록관리 체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발표라고 생각한다. 특히 단순한 제도 연혁 정리를 넘어, 기록관리 체계를 민주주의와 국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본다.

2006년 전부개정 이후 우리나라 기록관리 체계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설치, 기록관리기준표 도입,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전자기록관리 체계 구축 등은 기록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변화였다. 또한 RMS, CAMS, RAMP 등 전자기록관리 체계 구축은 디지털 행정환경 속에서 국가 행정의 신뢰 기반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마을 아카이브, 지역 기록화, 공동체 기록 활동 등이 확산되면서 기록문화가 공공기관 중심에서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공공기록물법」체계는 여전히 여러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결정 과정 기록의 공백이다. 현행「공공기록물법」제17조 따르면 주요 기록 생산의무는 결과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의 기획·협의·조정 과정 자체에 대한 기록 생산 의무는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실제 정책결정은 실무협의, 비공식 회의,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과정은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정책 실패나 사회적 논쟁 발생 시 정책 결정 경위와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기록 부존재”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정보공개 과정에서는 “해당 기록 없음”이라는 답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이 기록 존재 가능성을 먼저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이 기록 존재 가능성을 먼저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국민은 행정 내부 업무 구조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기록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공공기관에 명확히 부여하는 방향은 매우 필요하다.

기록 생산 의무가 존재한다면, 해당 기록이 왜 존재하지 않는지 역시 공공기관이 설명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기록관리와 행정책임성의 핵심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현재 기록관리 체계는 디지털 행정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웹기록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알고리즘 처리 결과, AI 기반 행정정보 등에 대한 관리 체계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앞으로는 기록 개념을 문서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고, 업무시스템 기반 자동 기록 생성과 AI 시대의 설명책임성 확보를 공공기록물법 개정의 핵심 과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기록 공개와 활용 문제이다. 현재 기록관리 체계는 생산·보존 중심으로 발전해 왔지만, 기록 공개와 활용은 상대적으로 제도화 수준이 낮은 편이다. 현행 기록물관리기관의 공개 및 활용 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기록 활용 지원 정책 역시 부족하다. 이제 기록관은 단순 보존기관이 아니라 기록정보서비스 기관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뿐 아니라 기록관·특수기록관 단계에서도 기록 전시, 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데이터 서비스 등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결국 앞으로의 「공공기록물법」 개정은 단순한 조문 보완 수준이 아니라 국가 거버넌스 구조 재설계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록은 더 이상 과거 문서를 보관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 국민 권리 보장, 디지털 행정의 신뢰성, AI 시대의 설명책임성을 담보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공공기록물법」은 첫째, 정책 전주기 기록화를 통한 책임행정 강화, 둘째, 기록 부존재 입증책임 제도화를 통한 설명책임성 확보, 셋째, 데이터·AI 기반 기록관리 체계 구축, 넷째, 기록 공개와 활용 중심의 서비스 체계 강화라는 방향 속에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간지(색지)

간지(색지)

한국 공공기록 관리 입법의 의의와 전망 토론

「씨랜드화재사건(1999)」[1] 희생 아동들을 추모하며

이승억 성남분원장(국가기록원)

발표문은「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의 2006년 이래 개정 경과의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분석함. 특히 6개 당면과제는 앞으로 국가기록원이 유념해야 할 내용으로 판단됨.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향후 전망을 포함하여 입법을 세 시기로 구분하는 논의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함.

01 법 1.0 : 포괄적 기록화를 규정한 역사적 입법

1999년 법 제정은 역사적, 사회적 의의를 지닌 입법임. 문서의 효력이나 그 취급 방법에 한정한 이전 규정을 넘어, 제정 법은'포괄적인 기록화'를 공공기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회의록 등 중요 기록을 생산하도록 법률 수준에서 규율한, 구미의 아카이브 법에서도 예를 찾기 힘든 입법임.[2] 다만, 하위 시행 규정과의 연계가 다소 모호한 면이 있고 기존'효력주의'의 흔적도 남아 있어 패러다임 전환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없지 않았음. 한편으로 이점이 후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의 단서가 되기도 함. [3]

02 법 2.0 : 포괄적 기록화의 구현을 앞당긴 ICT

노무현 정부에서는 오늘날 한국을 ICT 강국으로 만든 전 정부 정책에 힘입어 기록화에 획기적 변화가 일어남.'기록 못할 일은 해서도 안된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2003년 대통령비서실의 업무 과정 일체가 이른바'e지원□시스템의 D/B에 담기게 됨. 이후 정부기관과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법규에도 반영되었음. 이는 제정 법에 담긴 포괄적 기록화 규범이 새로운 기술에 힘입어 현실로 구현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 것임.

---

[1] 1999년 6월30일 경기도 화성의 청소년수련원 씨랜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부실 시설의 인허가 비위가 중요 원인으로 드러남. 이 사건은 결재받지 않은 기록의 등록 등 기록화 영역을 확대하는 제정 법의 취지가 공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음.

[2] 이는 경제 성장에 따른 성장통을 건설 사고의 형태로 앓던 당시 상황과도 무관치 않았음.

[3] 이른바 기록 요건에서'등록 vs 발생'을 둘러싼 재판에서의 논란이 그것임.

그런데 기술(技術)이 크리티컬한 요인이 되면서 기존 문리(文理) 기반의 기록 전문성이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이 대두됨. 특히 ICT기반 기록관리는 정보보호 등 다수의 분야가 관여하는 거버넌스[협치(協治)]가 불가피함.[4]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협치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로서 자신들의 고유한 역할이나 권한(authority)이 무엇인지 답할 필요가 있었음.

03 법 3.0 : 향후,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에 부합하는 제도

기록관리는 지난 20여년간 대두된 ICT, 정보 보호나 공개 등 민감한 이슈만큼이나 중요하며, 거버넌스의 완결성을 위해서라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문화·행정·사법적 여건 등을 통해 논의할 수 있음.

우선 문화적 여건은 사회 구성원의 활동과 기억에 기록이 미치는 영향에서 비롯됨. 최근 기록화는 기관이나 단체 등의 지향적 활동으로 정착하고 입법적 규범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 당연시됨. 행정적 여건은 공공 기록이 정부가 시민과 맺는 관계의 역동성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 때문에 주목해야 함. 사법적 여건은 디지털화된 기록이나 그 관리 상태가 판결의 핵심 증거나 정황이 되는 예가 드물지 않은 최근 사법 사정과 밀접함.

ICT 환경에서 양산하는 데이터형 기록을 하나의 사회적 재부로 확인하고 또 연결하여 모으기 위해서는 국민주권, 시민권익, 정책설명책임 등과 같은 기술 중립적인 개념 틀이 필요함.[5] 또 그 구현을 위해서는 현용기록 단계의 처분일정관리(scheduling)나 이후 평가선별(appraising) 프로세스가 기록 관리분야 소관으로 거버넌스의 필수 구성이 되어야 함. 우선은 그 권한과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관련 법 개정과 아울러 그에 맞는 위상의 기록관리기관 설치를 검토할 시점이 되었음.[6]

[4] 국제기록관리표준(ISO 15489)의 기초가 된 호주 국가표준(AS 4390)은 그때까지 같이 할 일이 없었던 다른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만들었는데 이는 기록관리의 달라진 상황을 보여주는 것임

[5] 영국 국가기록원의 OSP와 같은 주제 기반의 기획형 수집 권한 참고

[6] 과제, 기능별 업무기반의 기록 처분은 생산기관 기록관이, 국가나 광역 단위 기록화의 기획이라는 정무적 성격의 권한은 영구기록관리기관이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간지(색지)

간지(색지)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20년 성과와 과제 토론문

홍 원 기 (국회기록원 기록연구관)

01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No Country for Archives

오늘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20주년을 맞아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관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필자가 10여 년간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소회이자, 국가기록원 관계자들께 드리는 애정 어린 조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개정으로 국가기록원은 국가 전반의 기록물관리를 총괄 · 조정하고 기본정책 수립 및 표준화 등의 책무를 맡은 명실상부한 컨트롤 타워가 되었다.

> "*(중략)* **개정안의 취지**는 종전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에 기록물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전자적 관리체계의 구축 및 표준화, 기록물관리 기관간의 연계·협조 등을 추가함으로써 **중앙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가기록물을 최종적으로 보존하고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 - 전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2006. 2. 21.) 중에서 -

한편, 법에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는 별개로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을 갖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국가기록원 역할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취지였을 것이다. 아울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고유사무와 그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물의 특질을 존중하고 기관만의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제안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 중심의 중앙집중화 체제는 여전히 견고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위한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기록관리의 여정은 험난하기만 하다.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02 해바라기: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1] 공공기록물법 제35조제3항에 따르면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원한 비공개란 있을 수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공개 사유의 대부분이 소멸한다는 전제이다. 다만, 30년이 경과했음에도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보호 측면에서 비공개 연장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한편,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일 것이다.

제73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24.12.13.)에서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이 30년 경과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경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행법의'위원회'가 문언상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국회의 경우「국회기록물관리규칙」제32조에 따라 관련 사안을 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 및 국회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국가기록원은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에서 자체 기록물공개심의회를 거친 후 국가기록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대로, 국회기록보존소(지금의 국회기록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기록물관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기관의 특성과 기록물 유형에 조응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안타깝게도 이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 30년 경과 비공개 기간 연장 심의 현황(2025년 기준)]

구 분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국회	선관위	대법원·헌재	서울기록원	경남기록원	청주기록원
1차	자체 공개심의회	자체 공개심의회	비공개 기간 연장 사례 없음	자체 공개심의회	자체 공개심의회	비공개 기간 연장 사례 없음
2차	국회기록 관리위원회 (년 1회)	X		X	국가기록 관리위원회 ('21.6.22.)	

[2]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은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그동안 폐기 금지 제도와 관련한 여러 쟁점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토론에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관계 문제를 중심으로만 언급하고자 한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2024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이 있다. 당시 공수처는 국회를 포함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기관이 생산·접수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지시 등의 처리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법률에 따르면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소관 기록물에 대해서는 미리 그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폐기 금지를 통보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과의 협의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은 ① 국회가 과연 비상계엄 선포 지시와 관련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가? ② 폐기 금지 결정 이후 '기록물관리 현황조사 또는 점검' 방식에 예외를 적용할(내지는 유연함을 발휘할) 여지는 없는가? 였다. 전자는 토론 요지와는 다소 결이 다른 사안이라 하더라도, 후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재량 인정과 관련한 이슈이다. 사전협의 및 후속조치 과정에서 보여준 두 기관의 입장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국가기록원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자체적인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스탠스를 취하긴 어려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2. 3. 비상계엄 관련 폐기금지 사전협의 및 후속조치 관련 쟁점(요약)]

구 분	국가기록원	국회기록보존소(국회기록원)
대상기관 적절성	ㅇ 폐기 금지는 공수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어려움	ㅇ 국회는 비상계엄의 피해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지시 관련 기록은 부존재
1차 사전점검	ㅇ 기록물 평가·폐기 관련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대상기록물 포함여부 점검	ㅇ 생산시기('86~'12)로 보아 계엄 관련성이 없으므로, 자체점검 후 결과 통보
2차 방문조사	ㅇ 행정부 대상기관과의 형평을 위해 현장점검이 필요하며, 원문열람 요구됨	ㅇ 현장점검 자제(필요 시 목록 열람), 원문에 대한 열람 및 사본제작은 불가

필자가 기억하고 기록한 사전협의의 결과는 "국가기록원에서 현황 조사·점검을 요청하면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자체점검 후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었다. 물론 '목록 등의 열람 요청 시 협조'라는 단서를 붙여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목록 제출이나 방문조사까지를 고려한 협의는 아니었다. 당시 국회의 2025년 평가심의 대상은 1986년 ~ 2012년 생산분이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이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포함 여부를 행정부 수준으로 점검하리라곤 20년 차 기록 고인물 조차 미처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03 바람: 그라믄 안돼~ 그렇게 해서는 안돼!!

[1] 30년 경과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 심의는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자체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상급)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치도록 규칙 또는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제안하고 싶다. 국가기록원이 공개 재분류와 관련해 가장 시급히 추진할 과제는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비공개 기간 연장 심의가 아니라, 공공기록물법 제36조에 규정된 비공개 상한기간 기준안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공공기록물법 신구조문 대비표(안)]

현 행	개 정 안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신 설>	⑥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2] 2025년 1월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폐기 금지의 적시성을 비판하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를 촉구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필자는 협의회의 문제제기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법령 개정에 앞서 선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 국가기록원은 관련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한다는 원칙론은 고수하되,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 즉'구체적 타당성'요소를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간지(색지)

간지(색지)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20년 성과와 과제 토론문

남 경 호 (국가보훈부 기록연구관)

01 제2의 기록혁신의 필요성

2006년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은 국내외 최신 이론과 실무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법제도, 조직, 시스템 전반의 기록혁신을 이뤄낸 역사적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당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미래 환경에 걸맞은 '제2의 전면적 공공기록물법 재설계'를 단행해야 합니다.

02 현재 국가기록관리체계의 핵심 문제점

첫째, 현장의 판이한 환경을 무시한 '획일적 평가와 규제'의 모순

지난 20년간 기록관리 환경은 기관 특성과 규모에 따라 극심하게 양극화되었습니다. 상당수 기관이 여전히 '1인 기록관' 구조에 매몰되어 문서 '철' 단위 관리조차 버거워하는 상황이지만, 국가기록원은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획일적인 법령의 잣대만 내세우며, 실효성 없는 '건' 단위 관리만 종용하고 기관평가 점수로 현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관의 자발적 발전을 가로막는 '공공기록물법 규제'의 폐해

현행 법령은 공공기관 개별의 주도적 기록관리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국가보훈부의 사례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소속기관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50만여권의 동종대량 기록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전문 기록관리시설(국가보훈기록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처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투자이자 모범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당연히 이관[1] 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개별 기관의 자발적인 혁신 의지를 규제로 억누르는 이러한 태도는 매우 아쉽습니다.

[1]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하여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않은 기록에 한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자체보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현재까지 법무부가 유일하며, 국가기록원은 더 이상 허용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03 국가기록관리의 미래를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

[단기 과제] 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법체계의 다원화

획일적인 공공기록물법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합니다. 최상위 법률로서 국가기록관리의 대원칙을 규정하는 '국가기록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하위 시행령 수준에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정부산하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기관의 유형과 체급에 맞춘 세부 기록관리법을 분리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기관의 현실적인 기록관리 수준에 맞춰 법체계를 다원화할 때 실질적인 기록 자치가 구현될 것입니다.

[중기 과제] 국가 차원의 전문 인력 통합 관리와 수요 중심의 유연한 지원

'1인 기록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기록관리 인력 풀(Pool)' 제도 도입[2]이 필요합니다. 인사 관리는 국가 차원에서 총괄하되, 실제 배치는 개별 기관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주 인력이 불필요한 소규모 기관에는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부, 대검찰청, 법무부 등 자체 영구보존시설을 확보한 우수 기관에는 기존 조직의 주도권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전문 인력을 집중 배치·증원하는 상생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기 과제] AI 에이전트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존재 의미 검토와 처리과 역량 집중

AI 에이전트 환경에서는 사후에 문서를 수동적으로 이관받는 전통 방식의 기록관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AI가 결정을 내리고 행정 데이터를 실시간 생산하는 시대에는 행정업무가 이뤄지는 '기록생산단계(처리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발표자가 제안한 것처럼 기계가독형 포맷 생산을 의무화하고, 데이터세트와 AI 행정정보를 생성 시점에 실시간 포착할 수 있도록 처리과 중심의 플랫폼과 법제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04 맺음말 : 수동적 관리자에서 주도적인 협력자로

오늘날 AI와 인간의 주체성이 조화되는 대전환기 속에서 전통적인 문서 분류와 보존 업무는 이제 AI가 대신할 것입니다. 미래의 기록전문가는 수동적 관리자가 아니라 AI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주도적 협력자이자 전략적 파트너'로 거듭나야 합니다. 기술 변화와 현장의 다양성을 담아낼 새로운 국가기록관리체계 설계에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2] 중앙부처/소속기관(특별행정기관)과 국가기록원과의 인력 통합이며, 2015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했던 소수직렬 통합관리 계획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 관리 총괄을 현재의 국가기록원 담당하는 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간지(색지)

간지(색지)

발표 2

AI 시대,
국가기록관리체계의 혁신

오효정 교수(전북대학교)

2026 기록의 날

AI시대,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혁신

기록, 요람에서 무덤까지 – 전주기 통합 관리를 통한 AI 기록 생태계 기반 조성

2026.06.09

오 효 정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본 자료는 2026년 국가기록원에서 시행한 정책연구과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표자가 전체 내용을 작성한 후 생성형 AI를 활용해 수정 · 보완하였습니다.*

AI 시대, 기록관리 환경 변화

사람이 읽는 문서에서 기계가 읽는 문서로

형식(形式)의 변화

사람이 읽는 문서
HWP · Word · PPT

→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문서
XML · JSON · CSV · MD
ODT, ~~X (HWPX, DOCX, PPTX)

XML	JSON	CSV	MD
구조화된 데이터 표현	경량 데이터 교환 포맷	표 형식 데이터	경량 마크업 언어

HWP 파일 첨부 제한 조치

- **대내 채널**: 온나라시스템, 온메일 — 2026년 5월 18일부터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 적용
- **대외 채널**: 공직자 통합메일

⚠ **문서 형식의 전환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닌, 기록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신호입니다.**

AI 시대, 기록관리 환경 변화

AI가 문서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대

양(量)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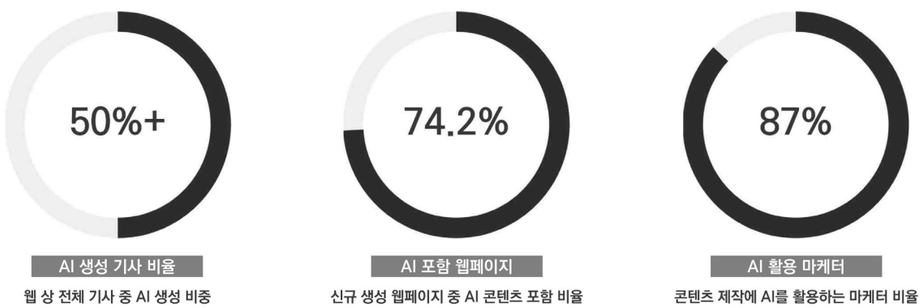

웹 상 전체 기사 중 AI 생성 비중

신규 생성 웹페이지 중 AI 콘텐츠 포함 비율

콘텐츠 제작에 AI를 활용하는 마케터 비율

웹 상의 65,000개 이상의 기사를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이미 2024년 말에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양이 사람이 작성한 콘텐츠를 추월함

ⓘ **AI 생성 콘텐츠가 인간 작성 콘텐츠를 수량 면에서 이미 추월한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 2026 Stanford University AI Index Report (2026.04.13)*
https://ahrefs.com/blog/what-percentage-of-new-content-is-ai-generated/

AI 시대, 기록관리 환경 변화

AI 기반 행정 운영체계(MCP* 등)의 등장

활용 방식의 변화

과거의 수동적·개별적 행정 방식 → AI 기반 자동화·맥락화 체계로 전환

과거 행정	현재 변화
법령 사이트 수동 검색	AI 기반 법령 분석 MCP
국회 회의록 개별 열람	정책 흐름 자동 분석
공문서 수작업 분류	문서 파서 + 자동 구조화
담당자 경험 의존	조직 지식 시스템화
문서 중심 업무	맥락 중심 의사결정

* MCP(MCP(Model Context Protocol): AI가 데이터베이스, 파일 시스템, 외부 애플리케이션 등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오픈소스 표준 프로토콜로, *'AI를 위한 USB-C, 만능 연결 단자'* 역할을 수행함

AI 기반 행정 운영체계는 기록을 단순 보존 대상이 아닌 실시간 행정 지식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국가기록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문서’ 행정에서 ‘지식’ 행정으로

패러다임 변화
- 인간 열람 중심에서 기계 활용 중심으로
- 기록이 더 이상 보존 대상만이 아니라 AI가 활용하는 행정 자산으로

① 기록의 생산 방식 변화
- 사람이 작성하던 기록 → AI가 대량 생성하는 기록
- 생산 주체와 방식 모두 근본적으로 변화

② 기록의 형식 변화
- 문서 중심 기록 → 기계판독형 데이터 중심
- 개방형 포맷이 표준이 되는 시대

③ 기록의 활용 방식 변화
- 보존 중심의 관리 → AI 기반 실시간 활용
- 기록의 가치가 보존 → 활용으로 이동

핵심 방향: 기록 보존기관을 넘어 국가기록 종합 플랫폼으로 진화

국가기록원의 AX 추진 현황

물리적 '이관'에서 관리권한 '이전'으로

공유 저장공간 환경* 기반의 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 국가기록원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소개 –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RAMP)” (2025) 자료 재구성

공유 저장공간 기반 전환은 단순한 시스템 교체가 아닌, 기록관리 거버넌스의 근본적 재편입니다.

국가기록원의 AX 추진 현황

물리적 '이관'에서 관리권한 '이전'으로

공유 저장공간 환경* 기반의 기록물 생산·관리통합시스템 도입

기록물의 소유권과 관리권: 물리적 이관 vs. 클라우드 논리적 이관

핵심 변화: '물리적 보관'에서 '제어와 권한(통제권)'으로 중심 이동

* 공유 저장공간 환경에서 전자기록물의 ‘이관’이라 함은 ‘관리권한 이전’으로 이해할 수 있음

공유 저장공간 기반 전환은 단순한 시스템 교체가 아닌, 기록관리 거버넌스의 근본적 재편입니다.

국가기록원의 AX 추진 현황

생산부터 관리, 활용까지 ‘전주기 통합 체계’로 전환

3단계 → 2단계 → 전주기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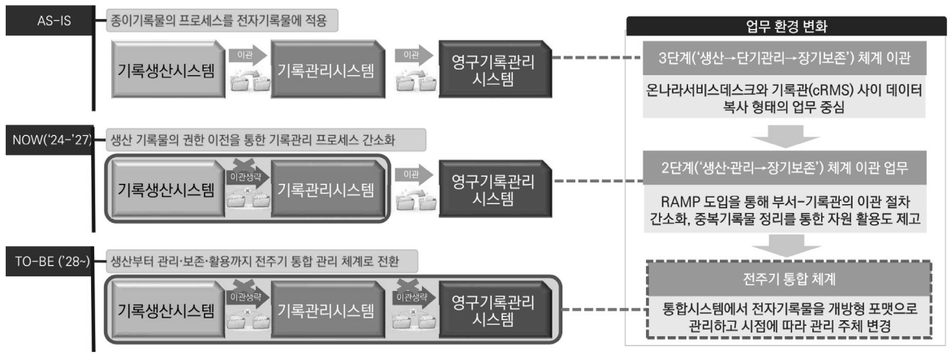

* 국가기록원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소개 –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RAMP)” (2025) 자료 재구성

즉시성 있는 전주기 통합 관리 체계는 기록관리의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 인프라 혁신입니다.

국가기록원의 AX 추진 현황

생산부터 관리, 활용까지 '전주기 통합 체계'로 전환

기록물 이관시기 단축 등 영구기록물 관리·활용 강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중

('25.10 입법예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입부 내용 변경 가능)

주요 내용

공공기관 기록물 이관 체계 개편

- 처리과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까지 이관시기 단축
- 관리권한만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하는 기록물의 경우, 생산·접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변환하여 관리

고려사항

- 권한 이전을 통해 이관 행위가 완료됨
  - 이관 시기에 따른 관리 주제별 관리권한 제어
  - 관리권한이 이전된 기록물의 법적 증거 가치 확보
- 꾸러미 생산 이후 모든 기록물은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
  - 접근 빈도에 따른 데이터 배치 전략 수립
  - 이중 보존을 통한 유일본 체계 안전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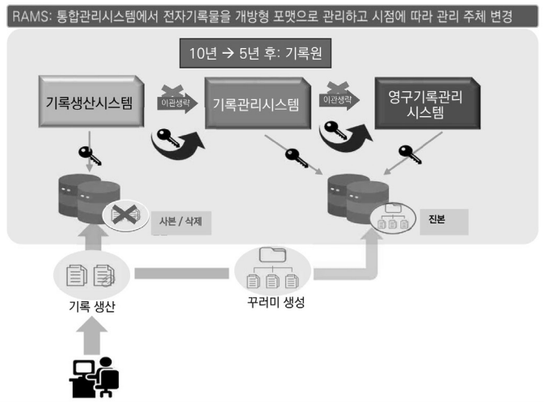

⚠ **즉시성 있는 전주기 통합 관리 체계는 기록관리의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 인프라 혁신입니다.**

AI 시대, 국가기록관리 체계 전환

'국가기록 종합 플랫폼'으로의 업무 전환 방향

5대 핵심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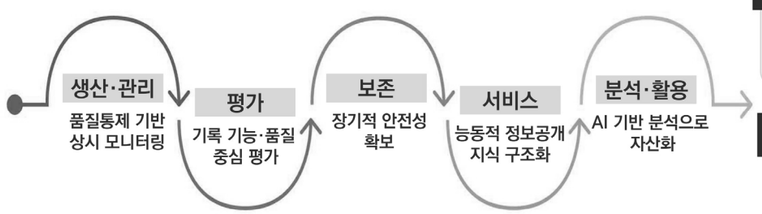

행정 투명성 강화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 투명성 강화

범정부 AI 공통기반

국가기록물의 가치 제고 및 활용 증진을 통해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플랫폼 구현에 일조

국가기록관리 체계 전환

생산·관리

생산단계부터 '질적 통제'를 통한 '상시 품질관리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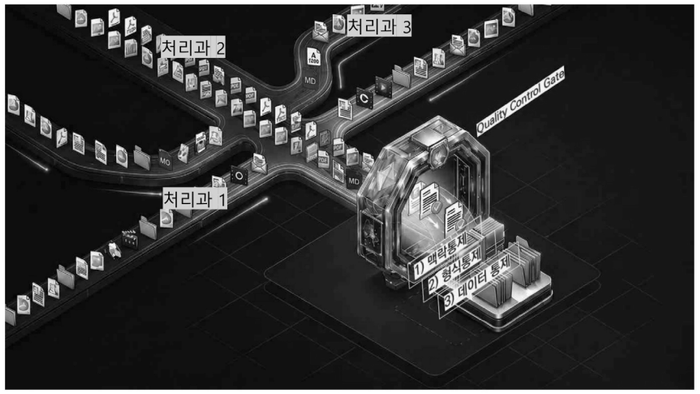

01 맥락 통제

- 생산 — 중요기록 생산 점검
- 맥락 — 직제개편 추적 / 생산기관 이슈 관리

02 형식 통제

- 생산/검수 — 표준 관리 데이터 검수
- 이전 — 무결성 검증

03 데이터 통제

- 법제 — 거버넌스 확립
- 서비스 — 이용가능성 확대
- 활용 — 데이터 자산화

국가기록관리 체계 전환

생산·관리

생산단계부터 '질적 통제'를 통한 '상시 품질관리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

이관 단계	맥락 통제	형식 통제	데이터 통제
생산 (전)	✓ 생산: 중요기록 생산 점검 기록의 완전한 생산·등록 여부 검증 →업무: 중요기록 생산현황 점검 및 평가	✓생산/검수: 표준 관리데이터 점검 자동화 기반 검증 체계 적용 ✓이전: 무결성 검증 파일의 물리적 무결성과 포맷 적합성 검증하는 단계 - 통제 요소: 진본성 및 무결성 확보 (데이터 보호) - 수행업무: 해시값 생성 및 동일성 검증, 감사증적 확보	✓법적·거버넌스 통제(소유권·보관권) 관리권한 이전의 법적 근거 확보 및 외부 권한 침해 방지 →서비스 수준 협약·계약서에 기록관리 요건 명문화 ✓서비스 통제 (이용가능성·품질) - 권한 이전 이후 기록 활용성과 검색 정확성 보장 →검색·재현성 테스트 - 서비스 품질 및 가치 평가 →기록 정보가 이용자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되었는지 가치를 직·간접적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평가 ✓AI 데이터 자산화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품질·활용성 확보 →AI-Ready 요건, 데이터 계보 및 출처 관리, 편향성 평가
이관 (중)	✓ 맥락: 직제 개편 추적 조직 개편 변화 속에서도 기록의 맥락 및 관리책임 연속성 확보 →업무 : 직제 개편 이력 자동 추적, 전거 레코드 관리, 메타데이터 품질 검수		
관리 (후)			

국가기록관리 체계 전환

평가

폐기 중심의 평가에서 기록의 본연의 '기능과 품질'에 기반한 평가

질적 통제 기반의 평가 체계 개편 방향

- ✓ 기록화 대상의 명확화
  - 생산기관 기능분석을 통한 중요기록 선별 및 적정 보존기간 산정
- ✓ 누락 없는 등록·관리
  - 즉시성 있는 생산현황 파악을 통한 중요 기록 누락 방지
- ✓ 오분류 및 부적정 보존기간 책정 예방
  - 맥락 기반 보존기간 일관성 유지
- ✓ 기록물 가치 기반 공개여부·보존기간 재책정
  - 이용자 요구 및 기관의 기능에 따라 공개여부 재책정 및 보존가치 재평가
  - → 기록물 가치 제고를 위한 다차원 평가 기반 평가·보존·폐기 프로세스 설계

기능/품질 기반 평가

- 행정적 가치: 업무 수행 증거로서의 기능
- 역사적 가치: 국가 지식 자산으로서의 의미
- AI 활용 가치: 기계학습 데이터로서의 품질
- 사전 평가 체계: 생산 단계부터 품질 기준 적용

국가기록관리 체계 전환

보존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온전'하게 보존

* 국가기록원 "오픈 포맷을 활용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보존 방안 연구" (2025) 자료 재구성

국가기록관리 체계 전환

서비스

'능동'적이고 '지식화'된 기록 서비스를 통한 투명사회 실현

기록물 공개 서비스

기존의 수동적·신청 기반의 공개 → **선제적·능동적 공개**

- **선제적 사전정보공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먼저 공개
- **이용자 수요 기반 능동적 정보공개**
  사회적 이슈 모니터링 기반 수요 예측
- **AI-Friendly 개방 (MCP 연동)**
  AI가 기록 데이터에 직접 접근·활용하기 용이

지능형 기록 검색 서비스

단순 키워드 검색을 넘어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는 지능형 검색

- **공공기록 특화 LLM**
  국가기록 데이터로 학습된 전문 언어모델
- **이용자 맞춤 지능형 검색**
  개인화 검색 및 연관 기록 추천
- **지식체계 기반 기록 탐색**
  온톨로지·지식그래프 기반 심층 탐색

국가기록관리 체계 전환

분석·활용

국가기록 종합 플랫폼 기반 국가기록 '자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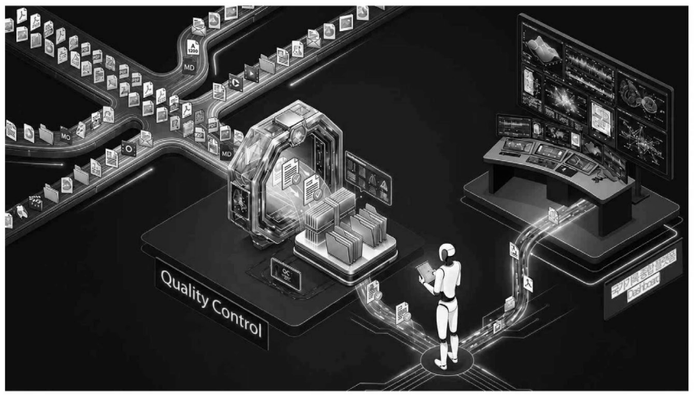

범정부 AI공통기반 일조

- 기계가독형(AI-Ready) 품질관리 체계 구축
- AI 학습·활용 기초데이터 제공 (Paradata 등)

국가기록 자산화

- 지능형 기록정보 서비스 전환
- 국가기록 종합 플랫폼으로써 국가기록물의 가치 제고 및 활용 증진

국가기록관리 기관 기능 재정립

기록관

- 생산 단계 기록 질적 통제 기능 강화
  - 메타데이터 검증, 꾸러미 생성, 품질 점검 수행
  - 생산 단계에서 오류·품질 문제 사전 차단
- 처리과 지도·교육 및 기록관리 기준 현장 적용
  - 기록관리 기준의 현장 적용
  - 담당자 교육을 통한 기록물의 누락 없는 포착과 인식 제고

국가기록원

- 기록관 역량 강화 지원 및 거버넌스 재편
  - **기록관-국가기록원 간 역할 분담 체계 명확화**
  - 교육·지침 제공을 통한 현장 적용 지원
- 전자기록관리 정책·표준·감독 기능 강화
  -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을 포괄하는 품질관리 **표준 및 지침 수립**
  - **데이터·시스템·보안 등 책임체계 명확화**
- 국가 디지털 자산 보존·관리 기관**으로서 기능 확장**
  - **개방형 포맷의 꾸러미 기반 품질검증 제도화로** 기록 생산 시점부터 질적통제 **실행**
  - **기록의 본연의** 기능과 가치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디지털 자산으로 통합 관리
- **범정부 AI 공통기반 플랫폼으로서** 국가기록 종합 플랫폼 **운영**
  - **AI 활용을 위한** 기계가독형(AI-Ready) 데이터 구축
  -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적시성 있는 정보 공개 **및** AI 친화적 정보 개방
  - **지식 구조화를 통한 지능형 기록검색 서비스 제공**

AI 시대, 국가기록관리 체계 혁신

핵심 제언 요약

생산 단계 품질 통제 강화

- ✓ 기록관리의 무게 중심을 보존 → 생산 단계로 이동
- ✓ 기록 생산 시점부터 AI-Ready 품질관리 체계 적용
- ✓ 중요기록물의 누락없는 포착 및 질적 맥락 통제

거버넌스 및 법제 정비

- ✓ 공유 저장공간 확대에 따른 데이터 소유권·관리책임 명문화 및 기록관리 권한 체계의 명확한 정립
- ✓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의 역할과 권한을 재정의

AI-Ready 기록 생태계 조성

- ✓ 모든 공공기록이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 생산·관리·보존되도록 포맷 표준화, 메타데이터 체계화, 개방형 API 제공 제도화
- ✓ 범정부 AI 서비스의 신뢰성 기반 마련

국가기록 종합 플랫폼으로 진화

- ✓ 단순 보존기관을 넘어 능동적 정보공개, 지능형 검색, AI 학습 데이터 제공을 통합하는 국가 지식 플랫폼으로 도약

Sovereign AI 실현의 출발점

혁신 로드맵

기반 구축
2023~2024:
공유 저장공간 기반 마련

체계 전환
2025~2027:
전주기 통합관리·품질통제

플랫폼 도약
2028~:
범정부 AI공통기반·Sovereign AI 실현

1단계: 기반 구축 (2023~2024)
cRMS 고도화 및 공유 저장공간 기반 전환
- AI-Ready 데이터화 및 표준 수립, HWP 파일 제한 등 개방형 포맷 전환 가속화, 기록관리 거버넌스 체계 정비

2단계: 체계 전환 (2025~2027)
전주기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생산단계 질적 통제 체계 실질화, 지능형 기록 검색 서비스 도입, 유형별 장기보존 체계 완성

3단계: 플랫폼 도약 (2028~)
국가기록 종합 플랫폼 완성
- 범정부 AI 공통기반 데이터 제공, 공공기록 특화 지식 서비스 운영, Sovereign AI 실현을 위한 국가기록 자산화

2026 기록의 날

기록, 문서에서 자산으로

대한민국 기록이 모이는 곳, 국가기록원이 Sovereign AI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효 정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간지(색지)

간지(색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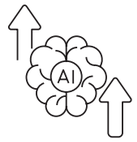

AI-Ready
기록 생태계 논의를 위하여

안 대 진 ((주)아카이브랩 대표)

01 발표의 의의

발표자께서는 AI 시대 기록관리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생산(AI가 대량 생성), 형식(문서 중심에서 기계판독형으로), 활용(AI 기반 실시간 활용)의 세 축으로 명료화하고, 이에 대응한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생산 단계의 질적 통제나 신뢰성 기반 마련은 AI-Ready 기록 생태계 논의를 위한 시의적절한 제언으로 판단된다.
본 토론자는 발표의 취지에 공감하며, 논의의 정교화와 향후 정책 설계를 위해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02 토론 의견 및 질의

(1) AI 생성 기록물의 검증과'설명가능성(XAI)'확보 문제

AI 생성 콘텐츠의 수량이 인간을 추월한 현실은 기록의 진본성, 신뢰성을 재정의하도록 요구한다. 발표 전반이 'AI를 활용한 기록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그 이면에 'AI가 생성한 기록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AI가 분류, 평가 등에 개입할 때 그 판단 근거가 사후적으로 설명되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는 설명가능 AI(XAI, Explainable AI) 요건이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NARA와 TNA 등 해외기관 역시 AI 도입을 넘어 '설명가능성, 감사나 추적 가능성'을 기록기관의 책무로 재정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2쪽 '데이터 통제'와 16쪽 '파라데이터(Paradata)' 개념이 출처, 프롬프트 이력, 사용된 알고리즘을 포괄하는 XAI 표준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의견을 청한다.

(2) HWP에서 개방형 포맷으로의 현실적 전환 방안

발표문 3쪽에 언급된 2026년 5월 HWP 첨부 제한 조치는 개방형 포맷 전환의 상징적 출발점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존 누적된 HWP·HWPX 기록물의 일괄 변환 비용과 변환 과정에서의 형식 손실, 이를테면 표, 서식, 전자서명 등 한국 행정문서 특유의 요소가 ODT, MD 등에서 충분히 표현되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개방형 포맷 전환을 'AI-Ready 생태계 조성'의 전제로 삼는다면, 전환 로드맵상의 품질 보증 기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HWP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여쭙고 싶다. HWP는 AI 시대의 암초인가, 그래도 끌어안고 갈 공공자산인가?

(3) 평가 패러다임 전환의 사회적 합의

13쪽에서 제시된 '폐기 중심에서 기능·품질 중심 평가로의 전환'은 매우 타당한 방향이다. 다만 'AI 활용 가치'를 평가 기준에 포함시킬 경우, 단기적으로 AI 학습에 유용한 정형 데이터가 우선 보존되고 비정형 및 소수자 기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록의 사회적 가치와 AI 활용 가치 사이의 긴장을 조정할 평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시민사회와 학계가 참여하는 다원적 AI 평가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4)'국가기록 종합 플랫폼'과 범정부 AI 공통기반의 역할 분담

18쪽 결론부에서 'Sovereign AI 실현의 출발점'으로 국가기록원을 자리매김한 비전은 매우 야심차다. 다만 현재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범정부AI 공통기반과 국가기록원이 수행할 고유 역할의 경계가 명확히 정의될 필요가 있다. 국가기록원이 범정부 AI 학습데이터의 '공급자'인지, 데이터 품질과 진본성을 보증하는 '인증기관'인지, 아니면 국가지식의 통합 검색을 제공하는 '서비스 운영자'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권한·예산·인력 구조가 달라질 것 같다. 발표자께서 구상하시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실현 가능한 전략은 무엇인지 견해를 듣고 싶다.

(5) 'AI-Ready 기록 생태계' 개념의 구체화

발표는 "AI-Ready 기록 생태계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는 "모든 공공기록이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 생산, 관리, 보존되도록 포맷 표준화, 메타데이터 체계화, 개방형 API 제공 제도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기록 생태계 측면에서 AI-Ready란 무엇일까? 단순한 포맷이나 API 수준을 넘어 어떠한 품질 속성을 갖는 데이터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정식화가 더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AI-Ready를 구조화 수준, 의미적 일관성(온톨로지, 전거), 계보나 출처 추적 가능성(데이터 프로비넌스), 편향 및 대표성 (Paradata)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 품질 프레임으로 인식한다면 이후 품질관리나 평가, 보존, 서비스 정책과 자연스럽게 연동될 수 있을 것 같다. Sovereign AI 논의 역시, "국가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의 투명성과 통제 가능성"이라는 두 축에서 AI-Ready와 연결하여 제시할 수 있을 듯 하다.

(6) 처리과 및 기록관의 업무 역량 격차 해소 방안

기록 생산 단계가 중요해짐에 따라, 일선 공무원(처리과)과 기관 내 기록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졌다. 생산 시점부터 메타데이터 품질 검수를 수행해야 하는데 AI를 활용한 업무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리고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 견해를 청한다.

03 맺음말

발표자께서는 국가기록관리 체계가 '문서 보관소'에서 '국가 지식 인프라'로 도약하기 위한 의미 있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제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정교화와 사회적 정당성 확보의 과제가 남았다. AI 시대 기록관리의 혁신이 기술 도입의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적 기록 거버넌스의 재구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간지(색지)

간지(색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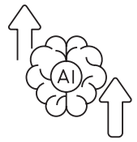

AI시대,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혁신 토론문

방 재 현 ((주)스토리안트 대표)

오늘 발표는 AI 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체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성과 정책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특히 기존의 기록관리 체계를 단순한 '문서 보존 체계'에서 '국가기록 종합 플랫폼'으로 재구성하고, 기록을 AI 활용이 가능한 국가적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관점은 기존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다.

우선 본 발표의 가장 큰 의의는 기록관리 환경 변화의 본질을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기록의 역할 변화'로 해석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기록 생산 단계부터 AI 활용을 고려한 구조화, 표준화,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를 제안한 점은 기존 기록관리 방식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관점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몇 가지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현재 한국 공공기록관리 환경이 AI 활용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발표에서는 AI-Ready 기록 생태계 구축을 제안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공공기록관리 환경에는 여전히 기계가 직접 해석하기 어려운 형태의 기록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사람이 읽고 이해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AI나 기계가 직접 분석하거나 학습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기록은 단순한 텍스트 데이터가 아니라 생산 배경, 업무 맥락, 관계정보 등을 포함하는 증거적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OCR을 통해 문자만 추출한다고 해서 기록이 곧바로 AI 활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AI 기반 국가기록 플랫폼 구축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단순한 디지털화 자체가 아니라 기록의 구조화(structuring), 메타데이터 정비, 그리고 기계가독성(machine readability)의 확보라고 생각한다.

둘째, AI 도입 확대 과정에서 기록의 본질적 가치와 신뢰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발표에서는 AI 기반 검색서비스, 공공기록 특화 LLM, 기록 데이터 자산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기록 활용성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행정적 증거성과 진본성을 가지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AI 데이터와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AI 기술이 기록관리 체계에 적용될 경우 단순히 기술적 효율성만이 아니라 기록학적 가치와 원칙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AI전환에 대한 현재 수준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통은 인식-기반구축-활용전면화-고도화-전환완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의 공공기관의 AI전환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변화공감은 어느 수준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종합하면 본 발표는 AI 시대 국가기록관리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매우 선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기록을 국가적 자산으로 재해석하고 국가기록 종합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다만 우선은 AX에 대한 로드맵을 구성하고 향후에는 AI-Ready 기록 개념의 구체화, 기계가독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구조 개선, 기록관리기관 기능 및 거버넌스 재설계, 그리고 AI 활용 과정에서의 기록 신뢰성과 윤리적·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보다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기록관리 혁신 모델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간지(색지)

간지(색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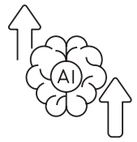

기록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업무혁신 및 AI 도입전략

이 젬 마 (국가기록원 디지털혁신과장)

저는 국가기록원에서 기록물생산관리통합시스템(공식명칭은 RAMS, 기록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 'RAMS 구축을 통한 기록물 전 생애주기 통합관리와 AI 기록생태계 기반 조성'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의 시스템 구축은 과거와 같은 단순한 시스템 교체를 넘어 AI 시대 기록관리 방식의 전면적 변화를 요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먼저 RAMS 구축을 통해 기록물은 처음 생산된 상태로 기록원까지 권한만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관체계'가 개편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데이터 중복 제거, 데이터 오류나 누락 방지'와 같이 '데이터' 품질 차원에서 많은 이점이 있고, 기존 이관에 들였던 시간이나 공수를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뜻깊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록물을 이관받은 후 기록관, 기록원에서도 선순환적인 업무변화가 따라와 줘야 할 텐데요, 교수님께서 앞서 발표하신 업무변화 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혁신되어야 할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1.1 또 평가와 관련하여 기록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기존의 행정적·역사적·정보적 가치 중 '정보적 가치'는 'AI 활용 가치'로 대체될 수 있다고 보시는거 같습니다. AI 활용가치는 기록이 가진 내재적 가치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가치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요?

2. 현재 RAMS는 생산되는 공문서가 AI 학습데이터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기록물 생산 즉시 바로 마크다운과 같은 기계인식률이 높은 데이터로 전환하여 저장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현재 RAMS는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AI 적용보다는 기록물의 AI 활용기반 구축에 더 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업무에 대한 AI 적용도 피할 수 없을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업무요구에 의해 해당 업무 포인트에 AI 에이전트와 같은 솔루션을 식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구축시부터 AI 네이티브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과 구축 후 후단에서 AI를 적용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후단에 AI 적용을 위해 현재 RAMS 구축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이제 AI가 문서를 생산하고, AI가 업무를 대신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기록관리에서 행위자(Agent)로도 기록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만약 AI를 행위자로 본다면 그 행위의 내용과 모든 이력이 다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AI는 인간 행위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남겨야 할 정보나, 남기는 방식도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또한 AI시대 기록관리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간지(색지)

간지(색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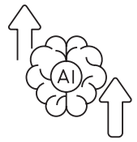

지방 기록관리 현장에서 본 AI시대의 과제와 질문

전 가 희 (경상남도기록원 기록연구사)

2024년 전자기록물관리 수업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과 기록관리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수님은 반복적이고 규칙화 가능한 업무뿐 아니라 의료, 법률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 역시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기록연구사의 업무 또한 상당 부분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필자는 “기록관리 분야를 인공지능 학습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가”라는 다소 막연한 질문을 던졌고, 돌아온 답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업무 체계는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무의 정교한 표준화와 체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기록관리 업무가 비표준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할 경우 인공지능의 학습 결과 또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효정 교수의 “기록의 지식자원화를 위한 AI 기반 기록관리 생태계 조성”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방 기록물관리기관의 현실을 고려할 때, 클라우드 기반 온나라시스템이나 RAMP와 같은 인프라가 충분히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여전히 추상적인 논의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기술 도입의 논의에 앞서, 현재 기록관리 업무 자체가 얼마나 표준화·체계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첫째, 업무 표준화·체계화의 선행 필요성

표준 기록관리 업무 중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록물 보존기간 확정 등 일정 부분 반복적이고 균일화가 예상되는 업무들의 체계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들이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와 방법론 자체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공개재분류 업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절차와 규정을 내실화하고 안정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정보공개제도와 연계한 공개재분류 업무의 현실화[1] ② 정보공개법 제9조의 준현용 기록관 보존기록물 적용 사례 축적 ③100년에서 10년이 경과한 비현용 기록물에 대한 비공개 대상정보의 정보공개법 9조 적용 논의 등입니다.

---

[1] 공공기록물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기록물 이관 또는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방대한 수량, 인력 한계, 정보공개제도와의 불일치로 재분류 결과를 현장에 즉각 반영하기 어렵다. 인공지능 활용 시 처리 속도 개선이 기대되나, 그전에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조항의 사례 축적과 공개여부 적용 기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재분류 후에도 정보공개 청구 시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어 결과값 고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분류 대상 수량의 합리적 축소와 공개 결정 기록물의 원문공개 원칙화 등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기록전문가의 역할 재정립과 역량 강화

인공지능 시대에는 단순 자격 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고도화된 전문성을 갖춘 기록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기록관리 분야에서도 어떤 업무가 향후 필요할 것인지, 기록전문가의 고유 영역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단위과제(카드)명 자동생성, 단위과제 재편철, 보존기간 확정, 생산현황 자동생성, 단위과제·보존기간·비공개사유 등 추천, 챗봇 서비스, 메타데이터 추출, 음성 녹취 및 검색[2] 등은 인공지능으로 자동화가 일부 예상되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기록전문가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방대한 기록 중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재구성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식 자원으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기록관리에서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 즉 맥락 이해, 가치 판단, 커뮤니티 소통, 윤리적 의사결정 등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의 도래가 기록관리 업무를 기록전문가 배치 전 "물리적 비전자기록물 관리와 서고 관리"로 퇴보시킬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수요가 높은 전문적 지식정보서비스"로 발전시킬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전문가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소속기관과 관할 지역의 기록을 깊이 이해하고, 기록관리의 본질적 가치를 탐구하며, 시민사회와 소통하여 이를 업무에 반영하려는 능동적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발표자께 드리는 질문

첫째, AI 도입 이전에 업무 표준화를 위한 선행 과제나 단계적 로드맵이 있을까요?

둘째, AI 기록관리 생태계가 중앙의 선도 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으로 확산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셋째, AI시대 기록전문가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할까요?

---

[2] 강윤아·오효정, 2017, 생성형 AI의 기록관리 현장 도입을 위한 실무자 관점의 고찰, p. 235를 인용·변경, 김인택·안대진·이해영, 2017,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기록관리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 인공지능과 기록관리 부분에서 기록관리 적용 항목을 발췌함"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